

## 비밀보호 계약서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에스케이테크엑스 주식회사(이하 "SK 테크엑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서울시"와 "SK 테크엑스"가 '서울시 풍수해 업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상 데이터 제공'(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 일방당사자(이하 "제공회사"라 한다)가 상대방(이하 "수령회사"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비밀정보'의 내용)

'비밀정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두, 시각 또는 서면 등 수단에 관계없이 양 당사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설계서, 계획서, 시방서, 도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제품계획과 예측, 시제품, 경영·기술·재무정보와 "제공회사"가 "수령회사"에게 비밀정보라고 고지한 정보 및 통상의 경우 비밀정보라고 간주되는 기타 정보 등
  - 기상센서 설치 위치, 기상데이터 공급 조건, 유지보수 현황 등
2. "제공회사"가 제공한 제 1 호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령회사"가 가공 또는 변경한

제반 정보

### 제 3 조 ('비밀정보'의 예외)

제 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시점에 "수령회사"가 동 '비밀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2.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서 "수령회사"가 제 3 자로부터 적법하게 획득한 정보
3. "수령회사"의 제 3 자에 대한 '비밀정보' 제공을 "제공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정보
4.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인 정보

### 제 4 조 (비밀보호의무)

"수령회사"는 제 7 조 제 1 항의 계약기간과 제 7 조 제 2 항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령회사"는 "제공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동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2. "수령회사"는 사업상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수령회사"의 고용인을 제외한 기타 고용인, 타 회사 또는 기타 제 3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비밀정보' 열람자에 대하여는 열람내역양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기록을 유지하되, "제공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내역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령회사"는 "제공회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령회사"는 "제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재생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 "수령회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그리고 '비밀정보'의 제공 전에 "제공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조 ('비밀정보' 이용의 제한)**

- ① "수령회사"는 '비밀정보'를 '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제공회사"의 '비밀정보' 제공 등은 "제공회사"가 "수령회사"에게 "제공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제 1 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상업용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계약이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 "제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회사”는 ‘비밀정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기타 “제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제공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두 반환 또는 폐기해야 한다. 폐기된 ‘비밀정보’의 폐기확인에 대한 “제공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령회사”는 그러한 ‘비밀정보’ 등이 폐기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 **제 7 조 (유효기간)**

- ①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상 “수령회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3 년간 유효하다.

### **제 8 조 (손해배상)**

양당사자는 본 계약 상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9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0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 11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SK 테크엑스"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8 년 07 월 일

서울특별시

SK 테크엑스

서울특별시

에스케이테크엑스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

시 장 박 원 순 (인)

대표이사 이 한 상 (인)